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6-0864925
신청일	2026-06-18 20:00:25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1019-201(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070-8770-5659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서부지검 김은성 개돼지 검사의 각하 처분에 항고한다
내용	항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서청원, 서울 서부지검 검사 (추가)공범: 김은성, 서울 서부지검 검사 제목: [형법] 제123조의 2(법 왜곡)  고소인은 서청원 고소 사건에(첨부자료1) 대한 김은성의 각하 통지에(첨부자료2) 대하여 항고하며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 입증한 김은성을 공범으로 추가한다. 항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p>항고 이유</p> <p>1. 피의자 서청원은 서울 은평경찰서장 김현환의 주차장법 위반 및 불법건축물 사건 (첨부자료3) 담당 검사로서, 현행범 김현환의 범죄를 100%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각하"하는 법왜곡죄를 저질렀다(첨부자료4).</p> <p>2. 그에 대해 고소인이 서청원을 법왜곡죄로 고소하였더니, 동료 검사 김은성이 담당, 역시나 "묻지마 각하"하는 법왜곡죄를 저질렀다. 이에 김은성을 (현행범 김현환 범죄 목인한)서청원의 공범으로 추가한다.</p> <p>자세한 것 ⇒ <a href="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05072026">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05072026</a></p> <p>항고인 김명호 2026.6.18</p> <p>첨부자료: 1. 서청원 고소장 2. 김은성 각하통지(서부지검 2026형제12650 ) 3. 김현환 고소장 4. 서청원 각하통지(서부지검 2026형제11091)</p>
첨부 파일	김현환고소장.pdf 서청원각하통지.jpg 김은성각하통지.jpg 서청원고소장.pdf

## 기피부서 정보

기피부서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기피자 정보	이장근 서청원 김은성
기피사유	이장근은 서청원 김은성 검사 새끼 밑의 수사관으로 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범죄 감싸기로 작당한 서청원과 김은성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다. 껌죄가 판치는 이 좃-같은 나라에서 당장 불이익이 떨어질 판인데...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6-0914867

접수일	2026-06-19 16:37:07
담당자(연락처)	이장근 (02-3270-4520)
처리에정일	2026-07-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6-19 17:41:00
처리결과(답변내용)	<p>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님.</p> <p>■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을 기피신청하셨으나 귀하의 관련 사건을 고려하여 대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 처리 지시하였으므로 부득이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에서 민원 접수 및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이장근 수사관입니다.</p> <p>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6-086492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p> <p>2. 귀하의 민원은 【서울서부지검 2026형제12650, 11091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의사 표시 취지】 로 이해됩니다.</p> <p>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법률 규정 【검찰청법 제10조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에 의거, 법률에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고장 등을 접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므로, '항고장'을 국민신문고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적법한 항고기간 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접수 및 등기우편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개별 사건마다 각각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작성 요함.</p> <p>- 안내전화 : 대검찰청콜센터 국번없이 1301, 서부지검 민원실 02-3270-4576, 서부지검 항고 담당 02-3270-4604</p> <p>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이장근 수사관 (☎ 02-3270-4250) (우)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p>

※ 대검찰청에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본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 및 답변에 대해 만족하신 경우 '만족' 평가 부탁드립니다.

※ 민원만족도 답변방법(예시)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해당 칸에 마우스 클릭).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b>한마디 더</b>	
<p>이장근</p> <p>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정의되어 있다.</p> <p>"항고장을 전자서면으로 제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 알려달라</p> <p>2. 판검사 시발-년놈들이 대놓고 법 목살/위반하는 주제에, 법적 안정성 개소리 운운들하는데, 너도 거기에 합류한 거냐?</p>	